

고려시대 ‘아무개 하(下) 무반직’ 구문의 의미와 영(領) 운영

이 미 지*

- | | |
|---------------------------|---------------------------------|
| I. 머리말 | III. 정인경 정안의 ‘아무개 하 무반직’ |
| II. 묘지명에 나타나는 ‘아무개 하 무반직’ | IV. (장군)아무개 하와 장군의 본령
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 명종 17년(1187)에 작성된 신보순의 묘지명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 있다. 예를 들면, ‘의종 7년 임신년 수진 하 교위에 배수되었고, 신사년 최청 하 산원이 되었으며, 을유년 언청 하 별장이 되었다.’와 같이 ‘(인명)+하(下)+(무반관직)’이 반복되고 있다. 김중구 묘지명에서도 같은 형식의 구문이 확인되며, 정인경·조인규 묘지명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임용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과 같은 연대기 기록이나 문집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몇 건의 무반 묘지명에서 확인되며, 고려 후기 정인경의 인사 기록을 담고 있는 정안에서는 그 사례를 대거 확인할 수 있다. 정인경 정안은 전제본이기는 하지만 흔치 않은 고려시대 고문서 사례이므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다.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대표논저: 2018, 『태평한 변방』, 경인문화사 ; 2020, 「고려 명종대 忠義 담론의 대두와 그 의미」 『韓國史學報』 81 ; 2021, 「고려 예종대 권적(權適)의 유학과 그에 대한 여러 기억」 『한국중세사연구』 67

기본적인 관독과 국역은 물론,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 절차와 배경, 정안에 사용된 판(判)·비(批), 준(准), 조사(朝謝)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행해졌다.¹⁾ 다만 본고에서 논해 보고자 하는 '(인명)하(무반직)'의 구문은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드물기는 하지만 족보 등에 전재되어 전하는 고려 말의 녹패 등에서도 이러한 구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는 문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행정적 구문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구문을 풀이하는 중요한 단서인 '하(下)'는 전투 상황에서 장수와 병사의 통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휘하', '지휘 하'로 풀이되곤 하는데, 과연 그러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1차 사료에 사용된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대의 사전에 기재된 의미로만 풀이할 경우, 자칫 그 용어에 함축적으로 담겨진 당시의 제도나 관행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수 있다.

“글을 쓴다”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자. 20세기 중반 이전의 기록이라면 이것은 원고지나 종이 위에 붓이나 펜 등으로 생각을 적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의 기록이라면 글을 쓰는 행위의 보편적인 도구는 더 이상 필기구가 아니다. 쓴다는 것은 키보

1) 정인경 정안의 관독과 역주, 여말 선조 인사 행정 문서적 측면의 연구는 이하의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韓相俊·張東翼, 1982, 「安東地方에 전래된 高麗 古文書 七例 檢討」, 『慶北大學校 論文集』 33, 인문사회과학 : 李基白 편, 1987,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 許興植, 1988,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 南權熙·呂恩暎, 1995, 「忠烈王代 武臣 鄭仁卿의 政案과 功臣錄券 研究」, 『古文書研究』 7 : 盧明鎬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 서울대학교출판부 ; 南權熙, 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 박재우, 2006, 「고려 政案의 양식과 기초 자료 -「鄭仁卿政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28 ; 박준호, 2007,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古文書研究』 31 ; 김형수, 2008, 「고려시대의 貼과 申省狀」, 『한국사연구』 142 ; 박성호, 2011, 「朝謝文書의 구조와 용어」, 『변화와 정착 -여말 선조의 조사문서-』, 민속원 ; 朴盛鍾, 2013, 「朝謝의 사용 의미와 文書式」, 『古文書研究』 42 ; 박재우, 2013, 「고려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

드로 날자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결과는 모니터에 구현되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쓰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그다지 변화하지는 않은 반면, 그것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문서를 기록하는 환경과 도구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듯 사료 상의 단편적인 용어나 단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사회상이나 관습, 제도 등을 이해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고려 무반의 인사 관련 기록에 나타나는 하(下)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묘지명과 정안 기록에서 확인되는 '(인명) 하 (무반직)' 구문의 용례를 정리해 보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무반직 인사 운영의 한 단면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기술 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구문을 '아무개 하 무반직'으로 칭하기로 한다.

II. 묘지명에 나타나는 '아무개 하 무반직'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 사례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묘지명은 아래의 신보순(申甫純) 묘지명이다.

- 가-1. 공은 나이가 약관이 되기 전부터 종군하여 25세 되던 해(1147)에 회충 하 대정(직을) 받았다. 의종 7년 임신년(1152)에는 수진 하 교위에 제수되었다. 신사년(1161)에는 최청 하 산원, 을유년(1165)에는 언청 하 별장이 (되었다). ... 또 낭장을 더하였다.²⁾

2) 「申甫純 묘지명」, 5~9행. “公年未弱冠從軍 二十五歲(1147)受會沖下隊正 毅宗七年壬申(1152)拜守珍下校尉 辛巳(1161)崔淸下散員 乙酉(1165)彥淸下別將 … 又加郎將”(http://db.history.go.kr/id/gsko_002_1230, 2022년 3월 14일 이하 같음) 위 기록 다음에는 1170년에 동북면으로 파견된 내용이 이어지므로 신보순이 낭장이 된 것은 1170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신보순은 주로 의종대에서 명종대에 활동한 인물로, 그의 묘지명은 1187년에 작성되었으며 실물도 현전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내용은 묘지명에 소개된 그의 관력 중 일부이다. 묘주가 군인에서 시작하여 무반의 하위 관직을 차례로 밟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별장이 되는 기록까지 ‘아무개 하 무반직’의 구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정 및 교위로 발령되었던 기록에는 관직을 ‘제수받다’라는 의미의 “수(受)”와 “배(拜)”가 부기되어 있어 이 구문이 인사 기록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반 관직 앞의 ‘회충, 수진, 최청, 언청’은 인명으로 풀이된다. 즉 신보순이 대정이 될 때에는 회충의 ‘하’였고, 교위가 되었을 때에는 수진의 ‘하’, 산원이었을 때에는 최청의 ‘하’, 별장이었을 때에는 언청의 ‘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하’를 매개로 짝지어진 신보순과 각 인명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글자 상의 의미를 토대로 신보순이 각 관직 임명 단계에서 각 인물의 아래에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아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직속 상급자(예를 들어 바로 윗 직급인지, 혹은 직급은 같지만 선임자인지)를 지칭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반직이 기본적으로 군대의 지휘 통솔 체계에 따라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휘 통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선발 또는 채용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일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보순이 1165년 언청 하 별장이 되었다는 기록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주목된다.

가-2. 무릇 군사를 모으는 것[會軍]과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御隸]을 잘 알고 병사의 진법[兵陣]을 익힌 자를 오군(五軍)에 속하게 하여 업사(業師)라고 불렀는데, 공이 그 임무를 주관하였다. 어러편오(魚麗偏伍)의 진법을 (시험하였는데 공의 성적이) 첫 번째 과에 속하니, 이 공으로 별장이 더해졌다.³⁾

3) 「申甫純 묘지명」, 7~9행. “凡諳會軍御隸習兵陣者 令屬五軍 號爲業師 公主其任

위 내용에 따르면 신보순이 별장에 임명된 것은 모종의 시험에서 진법을 운영하는 능력을 평가받았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묘주의 공적을 다소 과장하기 마련인 묘지명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별장 임용이 반드시 탁월한 진법 운용 능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언청 하 별장'이라는 문구 뒤에 바로 신보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아 별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신보순의 별장 보임에 언청이라는 인물의 개입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다음으로, 명종~고종 대에 활약한 김종구(金中龜)의 묘지명에서도 같은 구문이 확인된다.

나. 나이가 아직 적을 때인 명창 5년 갑인년(1194)에 가음(家蔭)으로 강릉직(康陵直)에 보임되었다. 다음해(1195) 겨울에 도필의업을 버리고 금오위 사령이 되어 산직과 진직을 역임하였다. 신종이 그를 뛰어난다고 여겨 불러서 내시에 들게 하였다. 곧 옮겨 별장이 되었고 더하여 장군 순영 하 낭장이 되었다.⁴⁾

김종구의 묘지명은 그의 사위인 전보린(田甫麟)과 친분이 있었던 손변(孫抃)이 1242년 3월에 작성하였으며, 실물이 현전하므로 내용이 후대에 조작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 1차 사료인 점은 분명하다. 김종구는 20세 되던 1194년에 관인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다음해 무반으로 전직하였다. 김종구의 초기 관력은 낭장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낭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나타난다. 앞서 신보순 묘지명에서 나타나던 형식과 달리 구문 앞에 장군이라는 정보가 부기되어 있으므로, 순영이라는 장군과 낭장인 김종구 간에 상하 관계가 성립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김종구가 낭

魚麗偏伍之陣 課在一科 以是功加別將”

4) 「金中龜 묘지명」, 4~5행. “年少以大金明昌五年甲寅(1194)起家補康陵直 明年(1195)冬 投筆 拜金吾衛使領 散眞 神宗奇之 召入內侍 尋轉爲別將 加將軍純永下郎將” (http://db.history.go.kr/id/gsko_002_0570, 2022년 3월 15일)

장이므로 장군 순영은 김중구에게 있어 상급자이며, 둘 사이에 지휘 통솔관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산원 이하의 직이었을 때의 기록은 묘지명에 나타나지 않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별장으로 임명될 때와 낭장으로 임명될 때의 기록은 왜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다.

우선 김중구가 낭장으로 임명될 때 장군 순영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특별히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장군은 1천명의 군인이 속해있는 영(領) 내에서 가장 높은 무반직이었으므로 혹시나 장군인 순영이 김중구를 낭장으로 발탁한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신보순의 별장 임용 관련 기록을 볼 때,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의 하 앞의 인명과 해당 무반직 임용에는 그리 큰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신보순의 경우 대정직부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발령 이후 기록에서 그들과의 관계나 인연이 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인과의 관계가 묘주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관계였던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김중구 묘지명의 사례를 통해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을 이해하는 단서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보순은 대정-교위-산원-별장에 이르기까지 이 구문이 나타났던 반면 낭장 임명시에는 이 구문이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김중구 묘지명에서는 이 구문이 낭장 임명 시에도 사용되었으며, 하 앞의 인물의 관직이 장군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두 묘지명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문제의 구문은 대정부부터 낭장에 이르는 무반 관직 임명 시 나타나며, 하 앞에 나타나는 인명의 지위는 낭장보다 한 품계 높은 중랑장 이상이 될 것이며, 확인되는 사례는 장군이었던 점을 정리해 둔다.

하 앞의 인명의 정체와 피발령자(묘주)와의 관계 등 이 구문을 이해하는 핵심어인 하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의문점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거의 동

시기에 작성된 아래 두 건의 묘지명에서도 해당 문구가 확인된다.

- 다. 병진년(1256, 고종 43) 원나라[大朝] 군사들이 말을 타고 우리 경역에 난입하였을 때 공은 나이 겨우 19세로 부름에 응하여 군대에 들어가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기를 많이 하여 효온 하 대정이 되었다.⁵⁾
- 라. 나이가 15세에 이르러 공을 세워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문자(를 일삼는 것은) 부박하다고 여겨 이를 버리고 태자부시위에 충당되었고 무오년(고45, 1258)에 이르러 장군 인규 하 대정에 보임되었다. … 계해년(원종 4, 1263)에 고위를 더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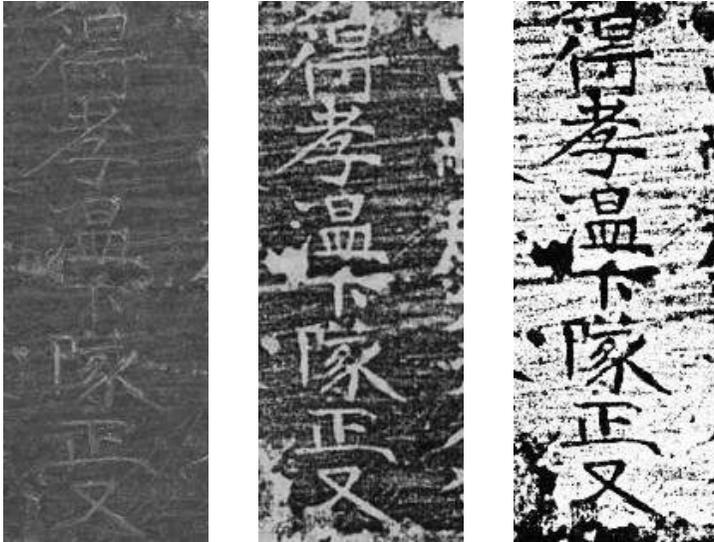
사료 다는 1306년에 작성된 정인경의 묘지명으로 현재도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라는 1308년에 방우선(方于宣)이 작성한 조인규의 묘지명인데, 『평양조씨세보』에 내용이 전재되어 있다.

정인경 묘지명에서는 문제의 구문이 입직 시의 기록에서만 나타난다. 묘지명 기록에 따르면 정인경은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 대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효온 하 대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문은 정인경의 정안(政案)에서도 확인된다. 주지하듯 정인경의 경우 평생의 관력 기록을 담은 정안의 전재본도 현전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이지만, 효온이라는 인명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이 정안에서는 대정이 되었을 때 하 앞의 인명이 ‘이온(李溫)’으로 나타난다. 목판본이나 필사본에서 효(孝)와 이(李)자가 혼용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므로, 필사된 정안의 기록보다는 현재에도 뚜렷하게 판독되는 묘지명의 명문에 의거하여 ‘효온’으로 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그림 1〉 참조).⁷⁾ 효온과 대정이 된 정인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5) 『鄭仁卿 묘지명』, 4행. “越丙辰年 大朝軍馬闌入我圻 公年甫十九 應募從軍 斬首虜多得 孝溫下隊正”(http://db.history.go.kr/id/gsko_002_2480, 2022년 3월 24일)

6) 『趙仁規 묘지명』, 6~8행. “年至志學 有立功匡國之大志 以文字爲浮薄乃捨之 充太子府侍衛 至戊午歲 得補將軍仁揆下隊正 … 癸亥加校尉”(김용선 편, 1993, 『高麗墓誌銘集成』 개정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III 장 2절에서 정안을 검토하면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그림 1〉 정인경 묘지명 중 “효온하대정” 부분

(좌로부터 실물 사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탁본, 탁본 반전이미지)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 및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조인규 역시 대정으로 무반 관료에 입사하였을 때에만 해당 구문이 나타난다. 교위, 섭산원, 중랑장, 대장군이 된 기록이 확인되지만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은 더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대정 발령 기록에서 하 앞의 인명이 장군이었다는 점을 밝혀두었으므로, 앞에서 본 김중구 사례(사료 나)와 종합해 볼 때 하 앞의 인명은 장군으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현전하는 고려 묘지명 중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나

7) 박재우(2006, 앞 논문, 99쪽)와 김인호(2013, 「고려 후기 정인경(鄭仁卿)의 정치적 기반과 활동」 『역사와실학』 51, 51쪽) 등은 정인경 정안 기록을 더 신뢰하여, 묘지명의 ‘효온’을 ‘이온’의 誤寫인 것으로 보았다.

타나는 사례 4건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확인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보순(사료 가)·정인경(사료 다)·조인규(사료 라)의 사례를 볼 때 해당 구문은 대정~별장 임명시에 나타나고 김중구(사료 나) 사례에서는 낭장 임명 시에만 나타났다. 사례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일단 문제의 구문은 무반의 낭장직(정6품) 이하 보임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이를 토대로 하 앞에 나타나는 인명의 지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임명자가 대정~낭장이었으므로 하 앞의 인명은 최소한 중랑장(정5품) 이상의 관품을 대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료 나와 라에서는 이들이 장군(정4품)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전히 '하'를 매개로 하는 두 사람의 관계, 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를 매개로 한 인적 관계가 확인되는 다른 사례는 없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문반과 승려의 묘지명 또는 비문 등에서도 하를 매개로 한 인적 관계에 대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문반의 경우 과거 시험을 통해 좌주 문생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고려 관인 사회에서 필수적이면서도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⁸⁾ 묘지명에서도 묘주가 합격한 과거 시험의 시관이 누구였는지 직접 드러내거나, 혹은 시관과의 관계를 문하(門下)로 표현하는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⁹⁾ 이 문하라는 표현은 더욱 압축되어 '하'로 기재되기도 한다.

8) 고려시대 좌주문생 관계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曹佐鎬, 1958, 「麗代 科擧制度」 『歷史學報』 10 : 許興植, 1979, 「高麗의 科擧와 門蔭과의 比較」 『韓國史研究』 27 : 1981,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 柳浩錫, 1994, 「高麗後期 座主·門生 關係의 變化와 그 性格 -元 干涉期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55 : 朴龍雲, 1990, 「高麗時代의 蔭敘制와 科擧制에 대한 比較 檢討」 『高麗時代 蔭敘制와 科擧制 研究』, 一志社 : 이중효, 2017, 「고려 墓誌銘에서 보이는 國子監試 기록의 검토 -국자감시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0

9) 해당 표현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權適(1148, 의종 2), 金義元(1153, 의종 7)] 아무개 門下에서 登第하였다는 표현[尹誦(1154, 의종 8)]도 있다.

- 마-1. 공은 좌주 유재 하에서 성균시에 합격하였다.¹⁰⁾
 마-2. 15세에 남성시에 응하여 정당문학 정문 하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25(세에) 이르러 학사 오연충, 임언 등 하에서 우등으로 합격하였다.¹¹⁾

위 사례는 왕충(王冲) 묘지명과 문공유 묘지명에서 묘주들이 각각 해당 시관이 주관한 과거에 합격하였음을 기술한 부분이다. 구문이 '아무개+하'로 시작되므로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무반 묘지명의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과 유사해 보이나,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그 실제적인 내용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사례에 사용된 하는 문하·좌하(座下) 등의 축약이며, 하 앞의 인명은 묘주를 선발한 시관임이 타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개인의 일생에서 스승과의 관계가 중시되었던 경향은 승려의 생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175년(명종 5) 찬술된 현화사 승통 각관(覺觀)의 묘지명에서는 승통 덕겸(德謙)과의 사제 관계가 “승통 덕겸의 문하에서 머리를 깎고 수업하였다(僧統德謙門下剃髮受業).”라고 기술되어 있다.¹²⁾ 1321년(충숙왕 8) 찬술된 윤보처 박씨 묘지명에서는 박씨의 다복함을 보여주면서 자제 중 한명이었던 승려 충탄(冲坦)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는 이미 한 절의 주지이며 선사라는 승계를 갖고 있었지만 왕사 구을(丘乙)의 당하(堂下)라는 표현도 부기되어 있다.¹³⁾ 각관 묘지명과 같은 경우는 전법(傳法)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충탄의 사례

10) 「王冲 묘지명」(1159, 의종 13), 4~5행. “公於座主劉載下中成均”(http://db.history.go.kr/id/gsko_002_1480)

11) 「文公裕 묘지명」(1159, 의종 13), 4행. “年十有五 舉南省試 政堂文學鄭文下中二等至二十五 學士吳延寵林彥等下中優等”(http://db.history.go.kr/id/gsko_002_0810)

12) 「현화사승통 覺觀 묘지명」(1175, 명종 5), 5행. “出家 僧統德謙門下剃髮受業”(http://db.history.go.kr/id/gsko_002_3220) 이는 18세(1138) 이전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13) 「冲坦 묘지명」(1321, 충숙왕 8) : 「尹瑜妻 朴氏 묘지명」, 7행. “次曰冲坦 祝髮爲僧 今鑑智王師丘乙堂下禪寺住持禪師”(http://db.history.go.kr/id/gsko_002_1750)

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경지에 오른 승려임에도 대덕고승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승려의 일생에서도 사제 관계가 매우 중요한 관계였음 짐작하게 한다.¹⁴⁾

이와 같은 공식적인 사제 관계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인종~의 종대에 관직 생활을 했던 오인정(吳仁正)은 지방관의 임기를 마치고 10년 동안 임용되지 못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좌주 김부식은 오인정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재산을 형성하기에 용이한 탐라 구당사로 발령되도록 도움을 주었다.¹⁵⁾ 이 과정에서 오인정은 김부식에게 경관직(京官職)을 요청하기도 한다. 당시 과거를 통해 맺어진 좌주문생관계가 이후에도 임용 등에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관계로 유지되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반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승려들간의 사제 관계도 그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공식적인 무거(武擧) 제도가 없었던 고려시대의 무반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회 생활에서의 기초적인 인적관계는 결여되어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 상, 국왕 혹은 권력가들에게 발탁되어 입사한 특별한 몇몇 사례 외에는 무반 간의 사제 관계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더구나 사료 내에서 살펴본 김종구의 경우, 입직(入職) 시가 아니라 정6품 낭장 발령 시에만 해당 구문이 나타나며,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확인되지 않는 무반의 묘

14) 승려의 생애에서 중시되는 사제관계는 投師剃髮과 傳法 관계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58년(의종 12) 찬술된 觀輿의 묘지명을 보면 각각의 단계별 스승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證智首座觀輿 묘지명](http://db.history.go.kr/id/gsko_002_2600).

15) 「吳仁正 묘지명」(1155, 의종 9), 2~4행. “年二十有五 當仁宗朝甲辰年春 中第初任元興鎮判官 有能名 政滿還京 守志慷慨 不與世俗浮沉 故十年不調” 및 6~10행. “于時 公之恩門金富軾掌政 朝廷士林之輩 皆遵公之志節於金相國 公亦述古劍詩以獻 詩有‘天昏月黑夜堂清有[]作老龍鳴’之句 相國見而[]曰 ‘爾爲門生 何不早詣於[] []是差授毛羅島句當使 公欲改受京官 相曰 ‘吾之所[] [] []以公家貧落魄 而彼地可資以爲衣食 故亦[] [] [] []可求矣’”

(http://db.history.go.kr/id/gsko_002_1370)

지명도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구문은 묘주와의 특별한 인연이나 대체 불가능한 인적 관계(예를 들어 사제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성격의 구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장에서는 묘지명과는 다른 맥락인 정안 기록에서 나타나는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의 사례를 살펴보고, 무반 관직자의 관력에서 나타나는 하의 의미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Ⅲ. 정인경 정안의 ‘아무개 하 무반직’

앞 장에서 살펴 본 사료 다는 고려 후기 정인경의 묘지명이었다. 정인경은 묘지명 외에 정안이 『서산정씨가승(瑞山鄭氏家乘)』에 전채된 형태로 전하고 있어¹⁶⁾ 고려 후기 무반의 인사 행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은 이 정안에서 대거 확인되는데, 정안에 나타나는 구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정인경 정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겠다.

1. 정인경 정안의 인사 기록 방식

정안에 담겨있는 그의 인사 기록은 총 46건¹⁷⁾이다. 이는 1256년(고종 43) 7월에 차대정(借隊正)이 되었던 시점부터 사망 후 양렬

16) 각주 1)의 연구 성과 참조

17) 이는 발령 사항이 아닌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정인경 정안에는 같은 날짜에 두 세 건의 발령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인경 정안의 ㉔번 인사기록(사료 바-1)은 대장군으로 임명한 기록(判)과 조봉대부로 임명한 기록(批)을 하나로 쓴 것이다. ㉕번 인사기록도 2건의 인사가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㉖번 기록의 경우에는 3건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하 본고에서는 정인경 정안 기록을 인용할 때 인사 기록의 순번을 원문자로 표기하였다.

(襄烈)이라는 시호를 받았던 1306년(대덕 10, 충렬 32)까지의 50년에 걸쳐 정인경에게 내려진 인사 발령 기록이자, 고려 조정의 인사 행정 절차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46건의 인사 기록은 크게 인사 명령이자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기록(이하 「결과 기록」)과 그 절차까지 보여주는 기록(이하 「절차 기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결과 기록」은 한 문장 정도로 짧막하며, 「절차 기록」은 세부 단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이두도 섞여 있어 꽤 복잡하다.¹⁸⁾ 정인경은 1288년에 자신의 정안이 파락된 것을 확인하고 수선을 요청하였는데, 「결과 기록」은 주로 정안의 후반부, 즉 정안이 수선된 뒤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바-1. ㉕ 지원 19년(1282, 충렬왕 8) 12월 21일 관하여 감문위 섭대(장)군(으로 삼다). 같은 날 비를 내려 조봉대부(로 삼다).¹⁹⁾
 바-2. ㉞ 대덕 3년(1299, 충렬왕 25) 3월 일 비를 내려 광정대부 관삼사 상장군(으로 삼다).²⁰⁾

첫 번째 사례는 한 날짜에 두 건의 인사 발령이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 사례는 한 건의 임용에 대한 기록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년 모월일에 모직(으로 삼음)'이라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인사 발령 요소는 모두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정안의 전반부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인사 기록은 조금 더 복잡하며, 상당히 상세한 절차를 보여준다. 정인경이 무반 관료에 입직하게 된 기록을 살펴보자.

18)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록 방식을 '간단한 방식'과 '복잡한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박계우, 2006, 앞 논문).

19) 「鄭仁卿 정안」, 100~101행, ㉕ 至元十九年十二月二十一日判 監門衛攝大軍 同日下__批 朝奉大夫

20) 「鄭仁卿 정안」, 121행, ㉞ 大德三年三月日下__批 匡靖大夫判三司上將軍

- 사. (a) (병)부에서 아뢴 바,
 기미년(1259, 고 46) 윤11월 15일에 영지(令旨)를 내려 흥위
 위 보승장군 박흥 하 좌부 제2고위령 대정(직을) 변동없이
 두고, 차(借)를 없애고 직배(直拜)하도록 동(同) (흥위위 보
 승장군 박흥) 하 차대정 정인경을 낙점[望]함. (이라 하니)
 (b) 어사대녹사 오군보가 기미년(1259, 고 46) 윤11월 일 (아래
 와 같이) 서명하여 첩(貼)함.
 (병)부에서 아뢴 바, “기미년 윤11월 15일에 영지를 내려,
 ‘장군 박흥 하 대정(직)의 차를 없애고 동하(同下) 대정 정
 인경을 낙점함.’”의 조사(朝謝)를 거침.
 (c) (이상의 내용은) 출납한대로 시행함.²¹⁾

위는 차대정인 정인경을 대정으로 발령한 내용이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인사 행정 절차를 재구성 해 볼 수 있다.

인사 발령 절차의 첫 단계는 병부가 임용 대상자인 정인경에 대한 서경(署經)을 어사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록에는 인사 발령의 기본 근거가 되는 인사권자의 명령만 인용되어 있지만(a), 인사권자의 명령에 의해 발령을 시행하기 전 어사대에 해당 인물에 대한 서경을 의뢰하는 맥락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인사권자, 즉 국왕의 명령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판(判)으로 인용되었겠지만²²⁾

21) 족보에 전제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이탤릭체는 이두를 의미함).

(a) 部所奏 己未閏十一月十五日令旨 興威衛保勝將軍朴暎下左府第二校尉領隊正庫 不動除借直拜 望同下借隊正鄭仁卿 (b) 御史臺錄事吳君保 己未閏十一月日名貼 部所奏 己未十一月十五日令旨 將軍朴暎下隊正除借教 同下隊正鄭仁卿矣 朝謝由 (c) 出納爲等以施行

현재 고문서 학계에서는 “朝謝”를 조선 전기의 용례에 따라 署經에 준하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 앞에 나아가 감사 인사를 하다’라는 본래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고려하거나, 윤언이가 인종에게 올린 謝表에서 임금에게 감사하는 이유로 “조사가 아울러 시행되었음(朝謝並得施行)”을 언급하였던 것 등을 보면 최소한 고려시대에 朝謝는 서경의 의미보다는 임금의 인사 명령이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22) 고려시대 관직 임명은 대체로 참서관인 경우에는 批로 나타나며, 참하관인 경우에 判으로 나타난다(李鎭漢, 1997, 「高麗時代 參上·參外職의 區分과 祿俸」 『

위의 사례는 영지로 제시되어 있다. 당시는 고종이 승하하고 태자 원종 역시 조정을 비운 상황이었으므로 태손인 충렬왕의 명령이 영지로 기록된 것이다.²³⁾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여사대에서 진행한 서경에 해당한다(b). 병부를 통해 인사권자의 명령을 전달받은 여사대에서는 녹사 오군보가 이 사안을 담당하였고,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되어 있지만 임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달받은 인사 명령을 재인용하는 외에 별다른 언급없이 병부에 회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여사대의 회신을 받은 병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인사 발령의 근거와 여사대의 서경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명시하면서(c) 정인경의 임용을 완료하였다. 짧은 문장이지만 인사 발령 조치가 근거와 절차를 모두 갖추어 시행되었음을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이처럼 정인경 정안의 전반부에 주로 나타나는 「절차 기록」은 크게 인사권자의 명령+서경[여사대첩]+임용 시행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인사 명령의 근거[令旨]를 제시하고 인사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첨부한 뒤[여사대첩] 인사 명령을 시행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고려시대 인사 행정 처리의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같은 정안 내에서도 사례에 따라 이러한 3단계의 구조에 약간의 들고 남이 있다. 예를 들어 7건의 사례에서는 여사대에 서경을

『韓國史研究』 99·100합집 : 1999, 『고려전기 官職과 祿俸의 관계 연구』, 일지사, 128쪽 ; 朴宰佑, 2000, 『高麗時期的 告身과 官吏任用體系』,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下, 서울대학교출판부, 66~67쪽). 그러나 정인경 정안의 判·批 사용의 비밀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南權熙·呂恩暎, 1995, 앞 논문, 34쪽 ; 朴宰佑, 2000, 위 책, 67쪽 각주 29] ; 金甫桃, 2011, 「고려시대 牽龍의 운영과 무반관직」, 『歷史教育』 117, 156쪽 각주 70]. 정인경 정안에서는 중랑장 임명(⑭)과 (차)장군 임명(⑮)이 모두 判으로 나타난다. 정인경이 장군이 된 이후의 임명 기록도 判과 批가 섞여있다. ⑯, ⑰, ⑱, ⑳, ㉑, ㉒, ㉓번은 判이며, ⑲, ㉑, ㉒번과 ㉓번 이후는 批로 나타난다.

23) 盧明鎬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 서울대학교출판부, 79쪽 각주 94)

의뢰하는 병부의 소주(所奏)가 생략된 채 어사대첩에서부터 기록이 시작된다.²⁴⁾ 1275년(충렬 1)에 이루어진 관제 개편의 결과도 정안에 반영되어 그 이후의 기록에서는 '部(병부)'대신 '司(군부사)'가, 어사대 대신 감찰사가 등장한다.²⁵⁾

이처럼 정인경 정안에 수록된 인사 기록을 기록 방식에 따라 크게 구분하자면 임용 내용만 인사 명령의 형태로 간결하게 기록하는 형태(「결과 기록」)와, 임용의 근거와 절차 및 시행 완료 조치까지 모두 기록하는 형태(「절차 기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임용 내용만 기록하는 방식은 대체로 정안의 후반부 기록에서 확인되기는 하나, 전반부에서도 그러한 방식이 나타난다. 따라서 임용되는 직급의 차이 혹은 임용 시기에 따른 기록 방식의 변화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인경 정안은 1288년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보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거를 상세하게 남겼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있겠지만²⁶⁾ 보수된 기록에 해당하는 기록 중에도 약 6건 정도는 인사 결과만 짧게 인용되어 있으므로²⁷⁾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정안이라는 한 문서 안에서 인사 발령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행정 조치가 상이한 방식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록을 남긴 실무자에 따라 혹은 각 시점의 상황에 따라 기록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²⁸⁾

24) 정인경 정안 인사기록 중 ⑭, ⑮, ⑰, ⑱, ㉒, ㉓, ㉔번이 이에 해당한다.

25) 정안 기록 중 1278년(戊寅, 충렬 4) 기록인 ⑰번 이후의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26) 박재우, 2006, 앞 논문, 102~103쪽

27) ⑥(경오년(1270), 2월), ⑦(지원 7년(1270) 4월), ⑧(경오년(1270) 6월), ⑨(신미년(1271) 7월), ⑩(임신년(1272) 9월), ⑰(지원 10년(1273) 6월)번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28) 정인경 정안에 나타난 인사 기록은 완벽하게 정형화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는 기년호 사례나 인사 명령(문서)을 지칭하는 용어 사례 등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1270년의 예를 보면, 이해에 정인경은 총 5번의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기년호로 간지를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⑥(경오년 2월), ⑧(경오년 6월), ⑨(경오년 7월), ⑩(경오년 12월)], 원 世祖의 연호를 사용한 사례도 분명

2. 정안에 나타나는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

II장에서 살펴본 정인경 묘지명의 내용과 같이, 그는 몽고와의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고 이때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1256년 7월에 대정이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섭장군으로 발령받은 1272년 12월까지의 15건의 인사 기록 중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사용된 인사 기록은 총 9건이며, 각 기록마다 발령 전후의 관직을 표기하면서 거듭 나타나기도 하므로 모두 14건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논의 전개를 돕기 위해 입직 시점부터 장군이 되기까지의 인사 기록 중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을 밑줄로 표시하여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정인경의 입직부터 장군 임명시기까지의 인사 기록

인사기록연번	시기	인사 조처	행 번호
①	1256. 7. 17.	將軍 孝溫下 <u>隊正借</u> ←有千下軍 鄭仁卿	10~15행
②	1259. 6.	政案施行 (將軍 孝溫下 <u>隊借正</u> 鄭仁卿)	16~20행
③	1259. 윤11. 15.	將軍 朴哄下 <u>隊正除借</u> ←同下 <u>隊正</u> 鄭仁卿	20~26행
④	1268. 8. 20.	將軍 洪專下 <u>校尉攝</u> ←保宜下 <u>隊正</u> 鄭仁卿	26~30행
⑤	1269. 7. 10.	將軍 洪專下(除) <u>攝</u> ←同下 <u>攝校尉</u> 鄭仁卿	30~34행

히 확인된다[⑦(지원 7년 4월)]. 이 과정은 정8품 산원에서 정7품 별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중 ⑥, ⑦, ⑧ 기록은 인사 발령 내용만 남아 있는 반면 ⑨, ⑩ 기록은 인사 발령 내용과 어사대첩, 발령 시행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인사 명령을 지칭하는 명칭 역시 劄과 聖旨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성은 기록이 轉寫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려시대 행정 운영 상의 융통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못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인사기록연번	시기	인사 조처	행 번호
⑥	1270. 2. 15.	左右衛 保勝第二領散員 ←校尉 鄭仁卿	34~36행
⑦	1270. 4. 10.	神虎衛 保勝第二領 攝別將 ←散員 鄭仁卿	37~38행
⑧	1270. 6. 14.	御牽龍行首 + 攝別將 鄭仁卿	38~39행
⑨	1270. 7. 18.	將軍 洪愼下別將攝 ←白和下校尉 鄭仁卿	39~42행
⑩	1270. 12. 20.(判) 1271. 1.(어사대첩)	將軍 洪愼下別將除攝 ←攝別將 鄭仁卿	43~48행
⑪	1271. 4.(判) 1271. 6.(어사대첩)	將軍 得林下郎將直拜 ←別將 鄭仁卿	48~53행
⑫	1271. 7.	太子府 右指誘 (+ 낭장)	54행
⑬	1272. 9.	中軍 神騎 都領 (←태자부 우지유)	55행
⑭	1272. 12.(判) 1273. 1.(어사대첩)	將軍 公秀下中郎將 ←得林下中郎將 鄭仁卿	55~58행
⑮	1272. 12.(判) 1273. 1.(어사대첩)	興威衛 精勇 借將軍 ←中郎將 鄭仁卿	58~61행

※ 범례

← : 임용 전후 관계 / + : 겸직 관계

() : 전제 과정에서 탈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①번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유천이라는 사람의 하에서 군인이었던 정인경은 1256년 장군 효온 하 대정이 되면서 무반의 관로를 걷게 되었다. II장에서 살펴본 묘지명 사례에서는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새롭게 임용되는 무반직을 표기할 때에만 나타났지만, 정안에서는 임용 전과 후의 관함을 언급할 때 빈번히 나타난다. 특히 새롭게 임용되는 직위를 표시할 때에는 이 구문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었다(⑥·⑦·⑧·⑫·⑬ 제외). “동하(同下)”라는 표현도 나타나는데(③·⑤) 이는 같은 인명 하에서 승진이 이루어졌던 경우에 굳이 그 이름을 두 번 쓰지 않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인사 행정의 맥락에서는 무반의 직급을 표기할 때 ‘아무개 하 무반

직'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형태였으며, 특히 신규 임용 직위는 더욱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이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⑥·⑦·⑧·⑫·⑬ 사례에서 이 구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먼저 ⑧·⑫·⑬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정인경이 견룡 향수, 태자부(견룡) 우지유, 신기군 도령으로 임명되는 기록이다. 견룡직은 무반 직급 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된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고종대 이후의 도령은 일부 중앙군에도 설치되어 단위 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실권이 부여되었고 특히 중군의 도령은 서반의 요직으로 불리기도 했다.²⁹⁾ 즉 향수, 지유, 도령 등은 관품이 부여된 직급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직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직위에 대한 임용 기록은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과 같은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기가 곤란하였던 경우의 사례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무반의 승진 경로를 따르고 있는 ⑥·⑦ 사례에서는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 대신 '00위 00(령)'의 구문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표 2>에 제시될 다른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논의를 정리해 보겠다.

<표 1>의 사례들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하 앞에 등장하는 인명의 직급이다. II장에서는 묘지명에 나타나는 사례를 토대로 이 인명의 직급이 중랑장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실제로는 장군의 직급만 확인되었다. 정인경 정안에서도 이 구문 속 인명의 직급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장군으로만 나타난다. 이와

29) 金甫桃, 2011, 앞 논문, 147~156쪽 ; 김갑동, 1996, 「고려시대의 都令」, 『한국중세사연구』 3, 76~77쪽. 견룡군의 조직과 성격 등에 대해 처음으로 전문한 연구에서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음서를 통해 견룡으로 발탁되는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견룡 조직을 겸직으로 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宋寅州, 1995, 「高麗時代의 牽龍軍」, 『大丘史學』 49 ; 2007,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도령에 대해서는 주진군 내, 혹은 양계 지역의 도령에 대한 연구도 있다(이기백, 1968,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254~255쪽).

관련하여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정인경의 관력 중 앞 쪽에서만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구문은 정인경이 차장군으로 임용된 1273년의 기록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다. 즉 군인이었을 때부터 중랑장이 될 때까지 정인경의 소속은 ‘장군 아무개 하’로 표현되었으며, 본인이 장군이 된 이후에는 해당 구문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장군과 중랑장 이하 무반직 사이에 역할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선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정인경이 각 단계의 무반직으로 전보될 때, 그 소속이 ‘장군 아무개 하’라 기술되기는 하지만 인사 이동은 정인경 개인에게만 해당할 뿐 장군과 함께 이동하지는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무반 직급의 임용은 장군을 관리자로서 하는 단위 조직 간에 시행되었고, 장군의 이름이 곧 단위 조직의 표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는 영마다 1명씩 배치된 장군이 무반 조직의 인사 행정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가졌는지 이해하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

중랑장 이하 무반 및 군인은 그들이 소속된 영을 담당한 장군의 관리를 받는 대상이었다. 장군은 자신이 담당하는 영에 소속된 인원의 인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아마도 임용을 지시하는 왕명에 언급된 “망(望)”의 초안 역시 장군에서부터 보고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즉 무반의 인사 행정은 장군을 책임자로 하는 조직인 영을 기본 단위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장군이 이끄는 영은 국방을 담당하는 고려 군사 조직의 기본 단위인 동시에 무반직의 인사 행정면에서도 기본 단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행정 단위와 군사 조직 단위가 일체화 되어 무반 조직이 구성, 운영되었다면 조직 관리 역시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하였으리라 생각된다.

30) 무반직 내의 계층은 다양한 기준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班次와 儀禮 등에서 볼 때에는 산원 이상의 무반직과 교위·대정이 구분되었다고 한다(김난옥, 2022, 「고려전기 무신의 지위 -대거란전쟁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8, 13~14쪽).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정안 기록에서 나타나는 장군의 인명이 항상 두 글자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묘지명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홍전(洪專), 홍신(洪愼), 박홍(朴暎), 백화(白和)의 경우 '성+외자 이름'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효온(孝溫), 유천(有千), 보의(保宜), 득림(得林), 공수(公秀) 등의 사례까지 모두 '성+외자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⑭번 기록의 장군 공수는 충렬왕대에 국왕의 측근이었던 인공수(印公秀)로 확인된다.³¹⁾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4품 장군을 지칭하면서 성을 제외한 이름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문인 만큼 성을 포함한 장군의 이름이 온전히 인용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재 확인 가능한 사료를 토대로 본다면 일단 무반직의 인사 행정을 다루는 공문에서 영을 구분하는 표지로 성을 제외한 장군의 이름이 활용되었다고 정리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⑥·⑦ 사례에서는 무반직 앞에 '장군 아무개 하' 대신 '00위 00(령)' 구문이 사용되었다. 이 구문의 형태 역시 정안 전반에서 확인된다.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정인경 정안의 인사 기록은 임용 명령 혹은 결과만 밝힌 「결과 기록」도 있지만, 병부의 의뢰에서부터 어사대의 서경과 회신, 이에 근거한 임용 시행에 이르는 인사 발령 조처의 3단계가 완비된 「절차 기록」도 있다. 이 경우 '장군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의 구조를 유지한 채 한층 더 상세한 소속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31) 盧明鎬 외, 2000, 앞 책, 81쪽 각주 96. 이에 따르면 『고려사』 권27 원종 12년 춘정월에 인공수가 장군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표 2〉 임용 직급과 소속 표기 방식 비교

인사기록 연번	A. 임용 명령 중 임용 직급과 소속	B. 서경 의뢰(兵部 所奏) 내용 중 임용 직급과 소속
①	將軍 孝溫下 隊正借	興威衛 保勝將軍 孝溫下 左部 第二校尉領 第二正
③	將軍 朴哄下 隊正除借	興威衛 保勝將軍 朴哄下 左府 第二校尉領 隊正
④	將軍 洪專下 校尉攝	神虎衛 精勇將軍 洪專下 左 第二校尉
⑤	將軍 洪專下 (際)攝	神虎衛 精勇將軍 洪專下 左 第二校尉
⑥	左右衛 保勝第二領 散員	-
⑦	神虎衛 保勝第二領 攝別將	-
⑨	將軍 洪愼下 別將攝	將軍 洪愼下 本別將
⑩	將軍 洪愼下 別將除攝	神虎衛 保勝將軍 洪愼下 左府 第一馬別將軍
⑪	將軍 得林下 郎將直	左右衛 保勝將軍 得林下 右部 第二郎將
⑭	將軍 公秀下 中郎將	-

〈표 2〉의 ①번 사례는 여러 차례 보아 온, 정인경이 무반으로 임직한 기록이다. 정인경을 임용하기 전 어사대에 서경을 의뢰하는 병부의 주문(B)을 통해, '장군 효온 하 차대정'으로 임용되는 정인경의 상세한 소속은 '흥위위 보승장군 효온 하 좌부 제2교위령 제2대정'임을 알 수 있다. 이하의 여러 사례에서도 '장군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 속 장군 소속 위와 그의 통할 하의 영이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사 명령(A)과 병부의 주문(B)을 비교해 볼 때, 묘지명에서 확인했던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의 '아무개 하'는 '00위 00(령) 장군 아무개 하'의 축약형임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시대 무반의 인사 행정 체계 속에서는 동일한 위(衛)에 배속되어 있는 여러 영을 구분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영을 맡고 있는 장군의 이름을 표지처럼 활용하였음이 거듭 확인된다.

⑥·⑦ 사례는 다른 사례와 달리 장군의 이름이 아니라 위와 령으로만 소속을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당시 장군이 궐석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영을 통할하는 책무가, 장군의 상급 직위인 대장군에게 다시 수렴되거나 바로 아래 직급인 중랑장에 위임될 수 없는 장군직의 고유한 역할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표 2>의 사례를 통해, '장군 아무개 하'라는 표현이 '00위 00령'과 동일하게 무반 인원의 소속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병부의 서경 의뢰 내용을 통해 장군 휘하 영 내의 조직도 일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 내의 하위 조직은 1차로 좌우부(部 또는 府)로 나뉘고(①, ③, ⑩, ⑪) 그 아래에서 다시 제1·제2와 같은 서수로 구분되는 몇 개의 하위 단위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①~⑤, ⑩~⑪), 이 최소 단위의 명칭은 안타깝게도 드러나 있지 않다.

이상에서 정인경 정안의 기록 방식과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 사례를 살펴보고, 이 구문의 원형 및 이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고려 무반직 인사 행정의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묘지명 등에 나타나는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의 원형은 '00위 00(령) 장군 아무개 하 무반직'이었을 것임을 병부에서 서경을 의뢰하는 주문의 내용을 통해 추정해 보았다. 이 구문은 기본적으로 중랑장 이하 무반 인원의 소속을 밝히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따라서 고려시대 무반직 인사 행정에서는 필수적인 구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성을 제외한 장군의 이름이 단위 영의 표지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영 내의 하위 조직도 부(部 또는 府)를 비롯한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임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장군이라는 직급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정인경 정안을 통해 살펴 본 장군을 중심으로 한 영의 운영 원리가 다른 맥락의 기록이나 다른 시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IV. ‘장군 아무개 하’ 구문과 장군의 본령

고려의 군사 편제의 기본 골격은 일찍이 1045년(靖宗 11) 5월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³²⁾ 이 방문(榜文)에서는 근장과 제위의 영 내에 배치되는 무반직과 군인의 인원을 밝혀 두었다. 고려의 군사 편제는 기본적으로 영마다 장군을 한 명 씩 배치하여 해당 영을 통할하는 구조였다. 장군에게 부여된, 영을 통솔하는 임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들도 참조된다.

- 아-1. (고종 4년(1217) 정월) 병오(28)일. 장군 기윤위를 보내어 본령군졸(本領軍卒)과 신기 두 반을 이끌고 충청안찰사와 함께 남적을 추토하도록 하였다.³³⁾
- 아-2. (고종 4년(1217) 5월). 왕이 충헌의 아들 장군(최)항과 (신)선주·(기)윤위·박세통·최준문 등 5령군에게 한 사람 당 쌀 한 석과 포 한 필을 내리니 … (기)윤위 군졸이 이유없이 소리치자 충헌이 함부로 하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³⁴⁾
- 아-3. (고종 5년(1218) 5월). 최충헌이 무사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낭장 대집성 등 5인을 차장군으로 삼았다. 집성 등이 본령(本

32)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靖宗) 11年(1045) 5月. “揭榜云 國家之制 近仗及諸衛每領 設護軍一·中郎將二·郎將五·別將五·散員五·伍尉二十·隸正四十四·正軍訪丁人一千·望軍丁人六百”

33) 『高麗史』 권22, 高宗 4年(1217) (正月) 丙午. “遣將軍奇允偉 率本領軍卒及神騎二班 與忠淸按察使 追捕南賊”. 당시 고려는 거란유종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징발한 전라도 지역의 군사들이 같은 달 12일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었는데[같은 책, 권22, 高宗 4年(1217) (正月) 庚寅. “全羅抄軍別監洪溥馳報 全州軍馬 年前十二月二十六日催發 行五日而還州作亂 殺逐長吏 因留住 由是 羅界軍亦不發”], 기윤위 등이 추토했다는 남적은 아마도 이들을 지칭하는 듯하다.

34)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 崔忠獻. “王賜忠獻子將軍珣及宣胄·允偉·朴世通·崔俊文等五領軍 米人一石·布一匹 忠獻集諸軍賜之 允偉軍卒無故呼噪 忠獻擅令停賜”. 같은 기사가 『고려사절요』 고종 4년 5월조에도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允偉軍卒을 允偉軍으로 표기하였다[『高麗史節要』 권15, 高宗 4年(1217) 5月. “命賜將軍珣·申宣胄·奇允偉·朴世通·崔俊文等五領軍米人一碩布一匹 崔忠獻集諸軍賜之 允偉軍無故呼噪 忠獻擅令停賜”].

領)이 없어 승도·노예를 가리지 않고 군졸이 되는 것을 허하니, 중외에 큰 소란이 일어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땀감을 구하러 가거나 꼴을 먹이러 가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다.³⁵⁾

위의 사료는 모두 고종대의 기록인데, 아-1은 남적을 추토하기 위해 장군 기윤위를 보내면서 '본령의 군졸' 등을 이끌고 가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 기윤위가 통솔할 부대 조직을 본령과 신기 두 반이라 지칭한 것을 보면 이 본령이라는 것은 특정하지 않아도 기윤위에게 제도적으로 배속되어 있어 본래부터 그가 통솔하였던 영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아-2의 사료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기윤위 휘하의 군졸들을 '윤위 군졸'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장군의 이름으로 지칭되었던 영이 바로 해당 장군의 본령이었으며, 여기에 소속된 군졸들은 '장군 아무개의 군(졸)' 등으로도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지명과 정안에서 나타나는 '(장군)아무개 하' 구문도 바로 이러한 해당 장군의 '본령' 소속임을 드러내어 주는 구문이었던 것이다.

또한 장군에게는 마땅히 본령이 배속되었어야 했음을 아-3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낭장 다섯 명이 차장군에 초수(超授)되었지만 이들에게는 본령이 배정되지 않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면 당시 장군에게는 일정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영이 배정되어 이를 통할하는 임무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정해진 제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영이 바로 장군의 본령이라 지칭되었던 것은 기윤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한편 고려는 고종대 이후 몽고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영의 기본 운영 원리는 계속해서 유지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료가 있다. 일본 다이고지(醍醐寺) 호은인(報恩院)에는 1367

35)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 崔忠獻. “忠獻欲得武士心, 以郎將大集成等五人爲借將軍 集成以無本領 不問僧徒·奴隸 許爲屬卒 中外大擾 家家杜門 至有不得樵牧者 忠獻聞之 怒奪其職”. 이 기사는 『고려사절요』 고종 5년 5월조에 실려 있다.

년(공민왕 16)에 왜구 금압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고려 사신단 명단을 적어둔 기록(이하 「명단 기록」)과 그들이 전달한 정동행중서성의 문서 두 종이 전사되어 있다.³⁶⁾ 특히 「명단 기록」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랑장 이하 오위[교위]에 이르는 무반 직렬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대표자 격인 중랑장 김용과 어증문의 소속이 '좌우위 보승(령)'으로 표기되어 있어, 앞서 정인경 정안에서 나타난 무반 직렬의 기본 체계와 관함 표기 방식이 원간섭기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함께 전하는 정동행중서성의 차부(箭付)와 자문(咨文)에서는 「명단 기록」과 달리 당시 일본에 파견된 고려 사신을 '만호 김범귀(萬戶 金凡貴)·천호 김용 등(千戶 金龍 等)'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김용의 직함을 만호로 기재한 「명단 기록」은 일본측에서 명단을 작성하며 약간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용의 실제 관함은 '천호 좌우위 보승(령) 중랑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동행중서성의 두 문서에는 김범귀라는 인물이

36) 이들 문서는 다이고지(醍醐寺) 호은인(報恩院) 문서(文書)로 칭해진다. 「명단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高麗國投拜使左 萬戶左右衛保勝中郎將金龍,

【檢校】左右衛保勝中郎將於重【文】二人

別將朴之 別將李長壽別將沖劔 別將金大

散員金哲 散員祁【邦】之用 散員金壽 散員金玉

伍尉金能文 伍尉朴千震伍尉金千 伍尉權成

伍尉【崔】舛玉 伍尉【金英】

禪雲寺長老延【銅】

정동행중서성에서 일본에 보낸 箭付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使萬戶將軍軍下】貞治六[고코노 덴노(後光嚴 天皇) 조지(貞治) 6년(1367, 공민왕 16)]二(중략) 右箭付着去 萬戶金凡貴·千戶金龍等【准此】. 정동행중서성의咨文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貴國之廣 豈能周知 若便發兵勦捕 恐非交隣之道 除已差萬戶金凡貴·千戶金龍等 馳驛恭詣 國主前啓稟外 爲此 本省合行移文 請

이상의 문서 원문은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東京: 吉川弘文館, 207~208쪽; 장동익, 2004, 『日本古中世 高麗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45~246쪽; 荒木和憲 編, 2021, 『中世日本 東アジア交流史關係史料集成』文書編, 東京: 弘文社, 92~93쪽 참조

김용보다 앞서 언급되고 있고 만호가 그의 관함으로 나타나므로, 김범기가 좌우위 보승령의 장군으로써 김용 이하의 인원을 이끌고 일 본을 방문한 것이라 추정된다.³⁷⁾ 정동행증서성의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영 조직 전체가 동원되었다는 점도 고려 왕조의 대외사행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하다.

이보다 6년 앞선 136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의 공문서를 『이재난고(頤齋亂藁)』 신축일력(辛丑日曆)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조선 후기의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신축년, 즉 1781년(정조 5)에 쓴 일기로, 상산(商山) 김씨 가문에 전래되어 오던 고려 말의 문서를 전사하고 검토한 내용이 남아 있다.³⁸⁾ 그 중 1361년에 작성된 녹패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 녹패 바깥 면에 크게 써두었다.

“선명하기를, 용검 하 좌우위 보승 중랑장 김운보의 이번 신축년

37) 고려 후기의 만호를 다룬 연구에서는 만호가 주로 '제추급'에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만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충렬왕대 사례를 보면 무반의 경우 주로 대장군이냐 상장군이 만호로 임명되고 있지만 장군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공민왕이 만호의 패를 회수한 1356년(공민왕 5) 이후부터는 귀화인에게 만호부의 직제를 제수하는 등 고려의 현실에 따라 제도가 변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성은 공민왕이 문종대 관제로 복귀를 지향하면서도 병제의 경우 여의치 않아 원의 만호부제를 답습하였다고 한 內藤萬輔의 견해를 지지하였다(이상 邊東明, 1989, 「高麗 忠烈王代の 萬戶」 『歷史學報』 121, 119쪽 表 1; 崔根成, 1988,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關東史學』 3, 73~75쪽, 92~99쪽 附表 1 및 附表 2; 오대영, 2021, 「고려 말 만호제와 공민왕의 군사개혁」 『전북사학』 61).

고다이저 소장 문서들을 보면 고려 전기로부터의 무반 관제와 조직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므로 무반직제가 문종 관제로 복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군이 만호라는 관함을 대유한 것은 대외 사행 파견시의 임시로 조금 더 높은 관품의 관직을 띠게 했던 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하필 원의 관직인 만호였던 것과 이들이 가져간 문서가 정동행증서성 명의였던 것은 고려 원종대 이후 일본 초유를 담당하였던 정동행성이 이후에도 관습적으로 對일본 교섭 창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38) 川西裕也(카와니시 유야), 2010, 「『頤齋亂藁』辛丑日曆 소재 麗末鮮初 고문서에 대하여」 『古文書研究』 36

녹은 116석 내에 … 보리 11석으로, 지금은 경창에서 할 것. 지정 21년 11월 일. 조청량 상서우사 원외랑 류[압]³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료는 고려 말 중랑장이었던 김운보라는 인물에게 신축년(1361, 지정 21)의 녹봉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서우사에서 발급한 문서의 내용으로 추정된다. 김운보의 직급과 소속을 나타내는 구문이 ‘아무개 하 00위 00령 무반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용검”은 김운보가 소속되었던 좌우위 보승령을 통할하던 장군의 이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공민왕 대에도 무반 관인의 소속은 위와 영 단위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영을 통할하는 장군의 이름이 구분 표지로 기능하였던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이 여전히 사용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⁴⁰⁾ 또한, 이 문서가 무반의 인사 행정 문서가 아닌 녹봉 지급 문서였다는 점에서, 무반 관직자의 소속과 직급을 나타내는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은 고려 관인 조직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구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9) 祿牌外面大書 [藝寶 亦曰云寶 亦曰文捧 亦曰文寶 初曰代大 在丁酉年] 宣命 龍劍下 左右衛保勝中郎將金云寶 今辛丑年祿 壹佰拾陸石內 … 麥拾一石 給京倉者 至正二十一年十一月日 朝請郎 尙書右司員外郎 柳[押][川西裕也(카와니시 유아), 2010, 위 논문, 192~193쪽]

40) 김자송 관교(1325)와 신우 관교(1344)에서도 무반의 소속을 ‘00위 00(령) + 무반관직’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고려 전기의 무반 조직과 기록 방식이 14세기에 유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자송 관교: “國王鈞旨 金子松爲檢校神虎衛保勝中郎將者 泰定二年(1325, 충숙왕 12)四月日”, 신우 관교: “王旨 申祐爲神虎衛 保勝攝護軍者 至正四年(1344, 충목왕 즉위)四月二十九日” 이상, 川西裕也(카와니시 유아), 2010, 위 논문, 190쪽 ; 남권희, 2002, 앞 논문, 497쪽 ; 鵝洲申氏(芝軒·潭涯)波世譜(1995) ; 川西裕也(카와니시 유아), 2010, 위 논문, 192쪽 재인용

V.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대 여러 기록에서 나타나는 '아무개 하 무반직'의 의미를 추정해 보고, 그를 단서로 하여 무반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가설을 논의해 보았다.

무반 묘지명에 간혹 나타난 '아무개 하 무반직'은 정인경의 정안에 인용된 인사발령 기록과 함께 고려해 볼 때 '00위 00령 장군 아무개 하 무반직'이라는 구문의 축약형이라 생각된다. 이는 장군 아무개가 이끄는 영 내에 소속된 중랑장 이하 무반직의 소속을 표현하는 기본 구문이자 인사 발령 시 피발령자의 소속을 명기하는 필수 구문이었다. 일반 군인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속을 구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시대 병제에서 영은 병력을 운용하는 기본 단위이기도 했지만, 인사 행정 역시 영을 기본 단위로 하여 운영되었을 것이다. 이는 무반 인원의 소속이 '장군 아무개 하'로 표현되었던 점, 무반직의 인사 이동이 장군 명의의 영 간에 시행되었던 점, 장군에게 배속된 영을 해당 장군의 '본령'이라 지칭했던 점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고려시대 장군은 병력과 무반 조직을 아울러 통제하고 운영하였던, 무반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무반 조직의 기본 구성이 고려 전기로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활용되었음을 일본 다이고지 호온인에 소장된 정동행중서성 문서 등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아무개 하 무반직' 구문은 무반 조직 내에서 뿐 아니라 고려 관인 조직 전체에 통용되던 구문이었으리라는 점을 『이재난고』 신축일력에 전사된 김운보 녹패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정인경 정안과 묘지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지의 입증과 큰 관련은 없으나 고려 사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상상력을 자극했던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안에 나타나는 '00위 00령 장군 아무개 하'라는 구문이 묘지명에서는

‘아무개 하’ 등과 같이 상당히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묘지명의 관력을 정리할 때에 정안 혹은 정안의 사본이 기본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성을 제외한 이름만으로도 해당 장군이 어느 위 소속의 장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고, 장군의 이름이 들어간 구문만으로 특정 장군이 이끄는 영에 소속된 무반 인원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던 사회였다는 점은 고려 관인 사회의 규모와 운영 원리를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인경 정안 기록을 통해 영 내의 하부 조직도 추정해 보았다. 영 내에는 부(部 또는 府)로 불리는 세부 단위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로 구분되는 하위 단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이고지 소장 문서를 통해 볼 때 영 조직은 전투 등의 임무뿐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단서로 고려가 대외 사행을 파견할 때 호위 등의 목적으로 동행하였을 군사 조직의 규모와 인원 등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군 아무개 하, 본령(本領), 신보순, 김종구, 정인경, 조인규, 김운보, 정안(政案), 다이고지(醍醐寺) 호은인(報恩院) 문서(文書)
 투고일 : 2022. 07. 15 심사완료일 : 2022. 08. 29 게재확정일 : 2022. 08. 29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김용선 편, 1993, 『高麗墓誌銘集成』 개정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장동익, 2004, 『日本古中世 高麗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KOREA>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emusum.go.kr/>

荒木和憲 編, 2021, 『中世日本 東アジア交流史關係史料集成』 文書編, 東京: 弘文社

2. 단행본

盧明鎬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 서울대학교출판부

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敘制와 科擧制 研究』, 一志社

李鎭漢, 1999, 『고려전기 官職과 祿俸의 關係 研究』, 일지사

許興植, 1981,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東京: 吉川弘文館

3. 연구논문

김갑동, 1996, 「고려시대의 都令」 『한국중세사연구』 3

김난옥, 2022, 「고려전기 무신의 지위 -대거란전쟁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8

金甫杻, 2011, 「고려시대 牽龍의 운영과 무반관직」 『歷史教育』 117

김인호, 2013, 「고려후기 정인경(鄭仁卿)의 정치적 기반과 활동」 『역사와 실학』 51

南權熙·呂恩暎, 1995, 「忠烈王代 武臣 鄭仁卿의 政案과 功臣錄券 研究」 『古文書研究』 7

- 朴宰佑, 2000, 「高麗時期的 告身과 官吏任用體系」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下,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재우, 2006, 「고려 政案의 양식과 기초 자료 -『鄭仁卿政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28
- 박재우, 2013, 「고려 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
- 오대영, 2021, 「고려 말 만호제와 공민왕의 군사개혁」 『전북사학』 61
- 川西裕也(카와니시 유야), 2010, 「『頤齋亂藁』 辛丑日曆 소재 麗末鮮初 고문서에 대하여」 『古文書研究』 36

<ABSTRACT>

The “Military Officer under Certain One” Phrase
and the Role of General (將軍) of Goryeo
Dynasty

LEE, Mi-Ji

This paper is a brief report of pursuing a short phrase of “[Person’s Name]+下(under)+[Military Position]” which is observed in several Goryeo epitaphs commemorating individual military officials and the transcripts from the fourteenth century such as the *Transcript of the careers of Jeong In Kyung (鄭仁卿 定案)*.

Analysing and comparing the samples from the various contexts it is highly considered that this phrase is a shortened form of a longer phrase of “[Name of] 衛 (Force)+[Name of] 領 (Corps)+General [Person’s Name]+下+[Military Position]” which shows the affiliation of the military post holder. The personnel transfers among the lower rank military posts from a soldier to senior colonel (中郎將, rank 5) were stated in this certain phrase especially in the transcript of careers. This possibly means that the general, who had been assigned in each individual corps from as early as the eleventh century, was actually in charge of the corps not only in the military operation but in th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out the dynasty. It is also an interesting point that the name of each general appears in the form of two syllables only. Those two syllables might be either the

given names without their family names or a composition of the family name and the single syllable name.

The shortened phrase also could be found in the *Transcript of wage statement* (祿牌) in the fourteenth century. With this sample we can see that this “[Person’s Name]+下+[Military Position]” phrase functioned as an official form showing the affiliation of individual military officers not only in the circle of military division but also in the whole bureaucratic community of the Goryeo dynasty.

Key Words: Military Command System, Personnel Administration, Sin Bo Sun, Jeong In Kyung, Jo In Gyu, Kim Un Bo, Document of Career Experience, Daigoji Ho'onin Script